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3.

발 의 자 : 최기상 · 김동아 · 천하람
이광희 · 남인순 · 이성운
백승아 · 김기표 · 박은정
임미애 · 맹성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,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.

이에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를 고려할 때,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,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·양

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와 관련,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(제1심) 피고인(239,997명) 중 변호사(국선·사선)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(75,554명)의 비율은 31.5%인데,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,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‘변호인이 있을 것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,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.

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86조의2, 제286조의3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6조의2(간이공판절차의 결정)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

1.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
2.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. 다만,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.

제286조의3(결정의 취소) 법원은 제286조의2의 결정을 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피고인이 자백하여 제286조의2제1호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第286條의2(簡易公判節次의 決定)</u> <u>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</u> <u>에 對하여 自白한 때에는 法院</u> <u>은 그 公訴事實에 限하여 簡易</u> <u>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할 것</u> <u>을 決定할 수 있다.</u>	<u>제286조의2(간이공판절차의 결정)</u> <u>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</u> <u>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</u> <u>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1.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</u> <u>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</u> <u>2.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</u> <u>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</u> <u>때. 다만, 변호인은 피고인의</u> <u>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</u> <u>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또</u> <u>는 동의할 수 있다.</u>
<u>第286條의3(決定의 取消) 法院은</u> <u>前條의 決定을 한 事件에 對하</u> <u>여 被告人의 自白이 信憑할 수</u> <u>없다고 認定되거나 簡易公判節</u> <u>次로 審判하는 것이 顯著히 不</u> <u>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事</u> <u>의 意見을 들어 그 決定을 取</u> <u>消하여야 한다.</u>	<u>제286조의3(결정의 취소) 법원은</u> <u>제286조의2의 결정을 한 사건</u> <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 검사, 피고인 또</u> <u>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</u> <u>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<u>1. 피고인이 자백하여 제286조</u> <u>의2제1호에 따라 간이공판절</u> <u>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</u>

	<u>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</u> <u>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2.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</u> <u>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</u> <u>는 경우</u>
--	--